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1월 28일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

나. 제안이유

-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위생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특색 음식개발 등 경영능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생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생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도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위생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